13805 과천시 희망길 36

과천외고 제2025-82호

가정통신문

전 화 : 070-4881-3400
교무부 : 070-4881-3451
행정실 : 02-6677-5726

학부모 대상 학생 인권 교육 안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알곱 빛깔 무지개

Q1. 협약의 배경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아동들이 생명을 잃고 인권과 삶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UN은 1959년 총회에서 아동이 가진 특성에 따라 보호받고 기본권의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합니다.
이후 UN은 선언 30주년을 맞은 1989년 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고, 채택일인 11월 20일을 매년 세계 아동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UN이 채택한 협약 중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가입한 협약이기도 합니다.

Q2. 협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조부터 제41조까지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 제42조부터 제54조까지는 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설명하는 아동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val):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기에 필요한 권리.
- 보호받을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전쟁, 부당한 형사 처분, 경제적 노동, 약물과 성적인 등 아동에게 유해한 일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 참여할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교육받을 권리, 자기를 중심 권리, 의견표명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참여 능력을 위해한 일체하는 데 필요한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Right to Non-discrimination): 피부색, 언어, 종교의 차이, 장애유무 성별이나 인종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부모의 정치적 입장 등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주는 일체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존중받을 권리.

- '학교에서의 아동인권 존중을 위한 학생인권 공동시책집', 경기도교육청 등 7개 교육청, 2018 참고

Q3. 협약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아동 권리협약은 이행하기 위해 일치 일이이 할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비차별 : 아동은 인종, 성별, 나이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제2조)
2. 아동 최상의 이익 :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제3조)
3. 생명, 생존 및 발달 : 국가는 아동이 빈곤, 기아 등의 이유로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제6조)
4. 아견 존중과 참여 :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의견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제12조)

-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위기 요해 지켜야 할 약속', 대한변호사협 · 국제아동인권센터, 2023 참고

Q4. 협약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협약 내용은 무엇인가요?

보호자는 「1991 아동인권동호지입니다」 아동인권을 보장한 우리 모두는 협약의 내용 전체를 알고, 아동의 인권 존중과 보호, 증진과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제42조)

아동권리협약, 시민대상 사이버 강좌
('아동권리협약' 검색)

Q5. 협약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있나요?

영국의 에글랜타인 잡은 1923년 세계 최초로 '아동권리선언'을 발표하였고, 이는 아동에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협약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출처 : 위키백과

아동권리선언이 발표된 같은 해(1923년),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인권에 관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은 '어린이입니다'를 발표하여, 어른이에 대해 무전의 인격적으로 해우하고, 만 14세 이하 노동을 폐지하며, 어린이가 배우고 놀기 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 '존중받고 존중하는 행복을 위한 아동인권 시책보고 2010 참고

Q6. 노키즈존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같은 아동인권 침해를 예계 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출입을 금지한 A사업에 대해, 일부 사례를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하는 연령에 따른 차별이라 판단하고, 시설이 주장한 어려움은 보호자 대상 안전서고 방지 주의의 강우에 따른 여름제한을 마리 고지하는 등 다른 방법을 통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아동대상 인권침해를 겪은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고등학생 아동인권에 관해 협력 권장하실 책을 추천해주세요.

'나는 놀고 참조하고 상상할 권리가 있어요!',
(알랑 세레, 고래이야기, 2022)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추천 도서] 아동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름을 가질 권리, 먹고 마실 권리, 치료받을 권리, 배울 권리 등에 대한 그림책입니다.

우리는 아동인권을 잘 모른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의 의미와 현재 | 공현*

아동인권에 관한 오해들

사람들은 아동인권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많이 들어본으로, 어떤 어떠한지 대충 알고 있다 생각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먼저, 사람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이르는 아동이 19세 혹은 만도하지라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권리의 주체인 '아동'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들이다. 그 중지는 '성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들', 즉 사회적 책도적으로 '미성년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고등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인권 문제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다루는 범위에 해당된다.

둘째, 아동인권이 문제가 되면 사람들은 학교로부터의 보호나 자유노동 금지 등의 제한적 이미지만 떠올리는 일이 잦다. '인권'은 본래 마땅 처우받, 사람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아우는 것임에도 말이다.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 규범의 시초인 1924년 제네바선언이나 1959년 아동인권선언은 보호영역을 권리, 생존할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등을 담고 있었다. 그러다 1989년 만들어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이르러서야 시민들의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참여의 권리 등이 명시되었다. 아동이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하나의 인격체이자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번역"한 학생인권조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 것은 1989년, 대한민국이 협약에 가입한 것은 1991년의 일로 이제 꼭 30년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30년이란 시간에 걸맞지 않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는 아동은 11%, 주양육자는 15.5%만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를 살려, 초 중 고 학교에서 아동인권이 더 잘 지켜지도록 만든 지역의 자치 법규가 학생인권조례이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보편적 내용으로 구성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한국의 학교 현실에 맞게 '번역' 및 '해설'하고 '현지화'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은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의 6곳에 달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가입 국가들을 심의하는데, 2019년 제5·6차 심의에서 지역을 사는 중 하나가 바로 학교 체벌 금지 등의 조치를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학생인권 보장을 추세가 아닌 전국에 적용되는 법률 및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대한민국 보고서 심의 참관
연구 아동들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을 만난 이야기 소개 부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함께 배워 할 것들

아동인권 및 학생인권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학생인권조례부터 한 번 공부해보는 것이 좋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기입국의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한 후 내놓는 최종 견해도 좋은 참고 자료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심의와 권고를 통해 국가가 협약 이행에 동참하도록 변화를 유도하니, 협약에 가입한 우리에겐 의사한 권고를 무시할 이유가 없다 하겠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5·6차 심의에서는 한국의 아동들이 직접 위한들을 만나 한국의 경쟁적 교육과 학업 부담, 성적 차별 문제 등을 OOO기에고 스물이후 운동을 소개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9년 10월, 심의 결과를 담아 발표한 제5·6차 최종 견해 중 학교와 관련된 내용만 몇 가지 살펴보자. 위원회는 "모든 아동이 성적과 관계없이, 남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으며, "학교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음"을 인권 문제로 주목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스물 이후 운동에 관해선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를 보고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보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차별 없고 적절한 보고독을 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의 참여는 여전히 선택하다고, 특정 주제에 제한되며, 학업 성적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아동의 견해가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아동의 참여가 제한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2011년의 제3·4차 최종 견해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비롯해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교육 제도에 관해서는 1968년에 제1차 심의부터 여러 차례 매우 경쟁적인 교육 환경이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받았다. 제5·6차 최종 견해에서도 '아동기를 사실상 박탈하는 지나치게 경쟁적인 교육 환경'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교육 제도와 시험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권고했다.

인권규범을 대한민국의 "현재"로 만들려면

올해 발표된 국제아동살권조사(CRC Watch)에서는 대한민국의 아동 행복도, 보건유 등 11위 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동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인권이 보장받기 위한 한국 사회의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아동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널리 공유하고 아동인권 보장의 법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아동인권 보장이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 공감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자체에는 학생인권조례를, 국회에는 아동인권기본법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 그리고 학생/청소년의 단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법을 만들라 요구해야 한다. 국제 인권 규범을 국내의 인권 현실로 만드는 힘은 바로 이들 자신과 그 주변의 지지자, 공호자들에게 달려 있다.

*남인기 역학
- 청소년인권운동단체 지원 책임활동가
- 청소년인권행동카니네, 대한민국 아동보호실태 보고서 공동기초은 등 활동
- 제5·6차 대한민국 주요업무 이행에 관한 인권보고서(2019) 및 2019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과정에 녹아고 대표단으로 참여
- 「대한민국 인권 근황보고서 아동인권이야기」, 2020년 공저 등

2025년 6월 25일

과 천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